

여 드린 프로그램에 明示된 바와 같이 二部로 나누어 갖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龍歌가 대개 語學의 重要資料로만 取扱되어 왔고, 그의 文學的인 價値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第一部에서 우선 가져질 語學面에서의 龍歌에 대한 檢討는 이제까지의 研究結果를 總整理하는 批判의 바탕이 될 것이며, 第二部에서는 文學과 音樂의 面에서 考察하는 새로운 問題의 提起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오늘의 이 심포지움은 매우 意義깊은 行事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第一部의 順序를 進行하기에 앞서 許雄教授께서 지금까지의 龍歌에 대한 研究業績을 綜合報告하여 주시겠습니다.

※ 綜合報告는 錄音關係로 省略함.

龍飛御天歌의 成立年代와 諸異本

姜 信 沆

標題의 問題는, 이미 1958 年에 「龍飛御天歌의 編纂經緯에 對하여」라는 題目으로 「文理大學報」(第 6 卷第 1 號, 서울大文理大, 1958. 2. 2)에 發表되었던 것이다.

世宗實錄 卷 108, 27 年 4 月 戊申(5 日)條의 記事는, 現存 萬曆本 龍飛天御歌(以下 龍歌라고 略稱함)의 序文(鄭麟趾作), 進箋文(權暉等)과 거의 같은 內容인데,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① 世宗 27 年 4 月 5 日에, 權暉, 鄭麟趾, 安止等이 龍歌 10 卷을 製進하였다.

② 「歌用國言, 仍繁之詩, 以解其語」하야 所撰歌詩가 「總 125 章」이었다.

③ 「謹繕寫裝潢, 隨箋以聞」하니 「刊板以行」을 命하셨다.

④ 「庶繼雅頌之遺音, 被之管絃, 傳示罔極」하는 것이 「臣等之至願」라 하였다.

이로써 보면 上記 서 사람 손에 依하여 「國言」으로 된 125 章 10 卷의 龍歌가 世宗 27 年 4 月 5 日에 撰進되어 刊行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로 因하여 「世宗 25 年 12 月에 新文字를 創制한 後, 純粹한 우리 노래를 이 새 글로 制作하여 보아, 이만하면 하는 自信을 얻은 後, 28 年에 訓民正音을 正式으로 公布하였다」라는 說까지 流行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世宗 27 年 4 月 5 日(正統 10 年)日字로 되어 있는 記事들(實錄記事, 龍歌序, 進箋文)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面에서 疑問을 갖게 한다.

1. 龍歌編纂을 위한 資料蒐集은, 24 年 3 月 1 日부터 着手되었던 것은 事實이나, 上記한 27 年 4 月 5 日에 製進·刊行되었다는 記事에도 不拘하고, 27 年 4 月에는 龍歌가 刊行된 일이 없고 世宗 29 年 10 月에 가서야 刊行되었던 것이며,

2. 「所撰歌詩」가 「總 125 章」이었다고 하지만, 現存 古板本 龍歌의 序文과 跋文에는 「123 章」이라고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第 100 章 以下の 章次表示數字에 重複이나 混亂이 있어, 애당초부터 125 章으로 되어 있었는지 疑問을 갖게 하며,

3. 27年 4月 以後에도 다음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補修되었다는 點.

- ① 27年 11月 5日(甲戌)에 世宗은 「旣讚龍飛御天歌 頌功德 然其體効詩作」 四言頗未盡意 今又欲令文臣 或絕句 或長篇……」라고 하여 龍歌의 四言詩에 不滿을 가지고 絕句, 長篇, 讚, 頌等으로 더욱 補充시키려 한 일이 있었는데(但 中止함), 「諺文歌詩」에 對해서는 言及이 없었고,
- ② 28年 10月 11日(乙巳)부터는 度祖以下 太祖까지의 業績 가운데 漏落된 것을 調査시켜 28年 11月 8日(壬申)에 龍飛詩에 새 事蹟을 添入시키게 하였는데, 이것을 擔當한 곳이 諺文廳이었으므로 單純히 龍飛詩만을 補修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 ③ 29年 2월에 完成된 龍歌註解 10卷의 卷末 跋文에서 崔恒은, 權踰 등이 製進한 뒤 곧 이어서 崔恒들이 註解와 本末과 音訓을 記錄한 註解 10卷을 完成하였다고 明記하고 있으므로, 27年 4月の 製進·刊行說은 그대로 認定하기 困難하다.

4. 「被之管絃」이라는 것도 27年 9月 13日에 唐樂과 맞추어 보려고 試圖한 일이 있고 完成된 것은 29年 6月 5日의 일이다.(致和平, 醉豐亭, 興民樂 등)

5. 本小論의 核心을 이루는 國文歌詞의 作者와 成立時期의 面으로 볼 때에도 다음과 같은 點을 發見할 수 있다.

- ① 權踰, 安止, 鄭麟趾 等の 學問的인 背景과 訓民正音과의 關係를 보면
 - a. 鄭麟趾만 訓民正音解例本에 後序를 썼을 뿐인데 그도 25년부터 26年 末까지에 걸쳐 田制詳定所提調로서 全國의 田制評定에 東奔西走하여 尨大한 量의 龍歌를 編纂할 餘裕가 없었던 듯하고,
 - b. 權踰와 安止는 左參贊·右贊成(權), 工曹參判(安) 등의 官職外에도 春秋館의 知事 또는 同知事로서 高麗史編修(24年 8月 12日에 撰進)와 太祖, 定宗, 太宗實錄 등 修改에 從事하여 이런 處地에서 龍歌編纂도 擔當한 것이지만, 始終 訓民正音關係事業(韻會諺譯·訓民正音解例本·東國正韻 등)과는 關聯이 없었고, 그나마도 權踰는 27年 4月 16日(己未)에 卒하였으며,
 - c. 權踰 等の 高麗史는 恒常 世宗의 不滿을 사서 드디어 31年 1월에 金宗瑞 等으로 하여금 春秋館에서 改修케 하였는데 權踰·安止 等の 私情에 이끌리어 內容을 歪曲 記述하였다는 것이 드러나 그 罪로 告身까지 追奪 乃至 剝奪 當했던 것이니, 이들이 編纂한 龍歌를 그대로 出刊시켰을 理가 없다.
- ② 이에 比하여 補修擔當者들인 崔恒 等은 거의 同一한 陣容이 世宗末年에 始終一貫하여 訓民正音과 關聯된 모든 事業(韻會諺譯, 訓民正音解例編纂, 東國正韻編纂)에 從事하였던 學者들이고,

- ③ 野史에 李叔蕃 같은 이가 權躔 等 以外에 龍歌編纂에 參與하였다고 있기는 하나 崔恒 等이 尨大한 龍歌의 本註 및 夾註와 音訓을 달았다는 것은 崔恒의 跋文에 明記되고 있는데다가,
- ④ 龍歌의 國文歌詞는 完全히 漢詩의 번역 같은 느낌을 주고 있으므로,
- ⑤ 이런 여러 點으로 보아, 訓民正音에 對해서는 專門家가 아니었던 權躔 等이 國文歌詞를 지었을 것으로는 보기 힘들고, 그들은 漢詩와 概略的인 註解를 製進하고, 本格的인 國文歌詞의 制作과 모든 註解는 崔恒들(崔恒·朴彭年·申叔舟·李賢老·李愷·姜希顏·成三問·辛永孫)의 손에서 29年 2月까지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우기, 註에 나오는 漢字의 音を 表示한 相當한 量의 反切使用은 韻學의 專門家가 아니면 不可能한 일일 터인데, 崔恒 等이 바로 그 專門家이었던 것이다.
6. 이런 여러 事實로 보아 27年 4月에는 龍歌의 完成이나 刊行을 보지 못하였고, 또 27年 4月 5日字로 된 記事들은 29年 2月에 脫稿된 龍歌를 놓고 記述한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면 國文歌詞가 이루어진 時期는 언제인가? 이 時期는 確然하게 斷定지을 수는 없으나, 訓民正音解例 東國正韻編纂, 龍歌補修, 이 세 事業이 同一陣容에 依하여 遂行되면서, 世宗 28年 9月을 前後로 하여 同一한 原則下에서 進行된 것이라고 보아진다. 李崇寧博士는, 龍歌에서 使用한 高度의 語學的인 規則으로 보아서 訓民正音解例가 나온 뒤, 그 決定에 따라서 國譯되었을 것이라고 하였고 (“世宗의 言語政策에 關한 研究”, 亞細亞研究 1卷 2號, 1958) 李基文氏는 主로 表記法의 檢討에서, 그것이 訓民正音解例 以前의 特徵과 以後의 特徵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점으로 보아 解例以前에 成立되고 그 後 修正되었을 可能性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龍飛御天歌 國文歌詞의 諸問題” 亞細亞研究 5卷 1號, 1962; “國語表記法의 歷史的研究” 韓國研究院, 1963)

現存 龍歌의 板本은 다음의 七種이다.

1. 가람本——가람文庫 所藏本으로 卷 1, 卷 2 뿐인 零本이나 現在 最古本인 同時에 世宗代의 初刊本으로 推測되고 있다, 木板本으로 板匡은 縱耗 260~263 耗 橫이 184 耗인데 正音字體는 釋譜詳節體와 같다.(나·ㄱ·ㄴ·ㄷ 등)
2. 古板本——木板本으로서 서울大 奎章閣圖書에 두 帙이 있으나 다 完本이 아님. 그 中 하나는 卷 5·6 한 冊을 缺하고, 또 하나는 卷 6이 燒失되다 남은 一部分만을 유지하고 있다. 그 外에도 卷 10에 毀損된 部分이 있고, 板本이 磨損된 흔적도 있어 壬亂前의 板本임이 疑心없으나 複刻本으로 보이는 同時에 紙質은 上下半紙를 붙인 종이가 大部分이다. 또 이 板本은 序文과 跋文에 123章이라고 적혀있고, 第 100章 以下의 章次表示數字에 重複이나 混亂

이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러나 이 古板本은 初刊本의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한 板本으로 認定되고 있다.

3. 實錄本——世宗實錄 樂志에 國文歌詞만 手寫한 것인데, 誤寫가 가끔 있다.
4. 萬曆本——上記한 古板本 以外の 단 板本을 가지고 光海君 4年(萬曆 40年)에 複刻한 것. 奎章閣圖書에 太白山本과 五臺山本이 있다.
5. 順治本——孝宗 10年(順治 16年)에 아마도 萬曆本을 臺本으로 刊行한 듯한 複刻本이다. 改刻, 誤刻이 있다.
6. 乾隆本——英祖 41年(乾隆 30年)에 順治本을 複刻한 것으로서 傍點의 누락이 한층 더 甚해졌다.
7. 影印本——1937年과 1938年에 萬曆本中 太白山本을 影印하고, 古板本에 의하여 修正을 加한 板本.

龍飛御天歌의 語學的 價値 (國文歌詞)

許

雄

※ 本 發表는 錄音이 안되어 要約으로써 代한다.

龍飛御天歌의 語學的 價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일로서, 國民學校學生에서 大學生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 價値를 論議함은 새삼스러운 感이 없지 않으나, 이 機會에 한번 整理해 보는 것도 전혀 無意味한 일은 아닐것 같이 생각된다.

龍歌의 語學的 價値는, 그것이 訓民正音이 頒布되기 前에 만들어졌다는데 있다. 卽 訓民正音으로 된 文獻 中에서 그 年代가 가장 오래된 것이란데, 그 첫째 重要性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年代가 오래 되었다는 것은, 最古의 語形을 보여주기 때문에 貴重한 것이다. 그러나 아깝게도 龍歌의 그 방대한 記述은 大部分이 漢文으로 되었고, 그 가운데 125章의 노래만이 國語로 되어 있을 따름이다. 따라 여기에 실려 있는 서기 15세기 순국어(漢字語를 除外)의 分量은 그리 많지는 못하는데, 여기 나타나는 單語의 數를 品詞別로 대충 간추려보면, 모두 433 單語가 된다.

名 詞	—	156	}	170 (體 言)
代 名 詞	—	11		
數 詞	—	3		
動 詞	—	186	}	220 (用 言)
形 容 詞	—	34		
副 詞	—	24	}	43 (修飾語)
冠 形 詞	—	19		